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9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2일, 고영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9월 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 및 제6조)
- 의회 보고(안 제7조)
- 표창 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제정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공모사업’과 ‘담당부서’의 정의에 대하여,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담당부서 지정, 전담조직 별도 구성,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와 구청장의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상시 관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일정 요건의 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전 구의회에 보고할 것과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매년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모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구는 공모사업과 구정 주요사업과의 연계성, 타 사업과의 중복·과잉투자 여부, 사후관리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공모사업 신청은 지양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동안 국·시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이 이미 선정된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었음.
- 의회에 예산편성 전 사전 보고를 하는 절차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권한¹⁾을 고려하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사항은 아니며²⁾, 사전 보고를 통해 국·시·구비 매칭으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의회가 예산안 심의 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한편,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 사업부서의 부담가중 및 의욕저하 등을 이유로 구의회 보고시점을 신청 전이 아닌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이전까지로 완화해 달라는 부서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로 서울시 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제47조 제1항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50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142조(예산의 의결)

2) 법제처, 의견 23-023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